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2. 9. 1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습권 보장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직무) 장애학생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
- 제3조(조직) ①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본부 소속으로 하고 센터장 1명을 두며, 센터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.
 - ③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업무)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.
 - 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제5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 - 3. 교직원·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
- 4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5조(편의제공) 총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한다.
 - 1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 - 2.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
 - 3. 취학편의 지원
 - 4. 정보접근 지원
 - 5. 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

제2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설치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 - 2. 주요사업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 - 4. 센터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- 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교무과장, 학사지원과장, 학생지원

- 과장, 기획평가과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시설과장, 입학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나머지 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9조(임기)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운영

제13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제137호, 2012. 9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